

의안번호	2219194
의 퇴 인	윤영석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계번호	26E279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 확대 - 공제율 50%로 상향조정 및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 부여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공제율을 현행 40%에서 50%으로 상향조정하고,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를 부여
- 다만,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개인별 연간 총 급여액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,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한 상세정보 필요

-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%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, 연간 전통시장사용분 중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10%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문목적별·지역별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정보 필요

□ 그러나 개인별 방문목적별·지역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-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를 총급여규모별(13개 소득구간)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공제항목별(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체육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등, 신용카드) 사용분에 대한 집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- 그러나, 개인의 방문목적별·지역별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해당 자료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추정 곤란

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, 2026년 기준

제도	항목	공제제도
소득공제율	· 신용카드	15%
	·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	30%
	· 문화체육사용분(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, 체육시설이용료)	30%
	· 전통시장 사용분	40%
	· 대중교통 사용분	40%
소득공제 한도	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이하	300만원
	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초과	250만원
	· (추가) '문화체육', '전통시장', '대중교통' 사용분	300만원 (*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)
일몰 기한		2028.12.31.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